

## 2024년도 『스마트 해상물류 유니콘테스트』 모집 공고

스마트 해상물류 분야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창업기업 발굴·지원을 위한 『2024년도 스마트 해상물류 유니콘테스트』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3월 22일

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

### 1 모집개요

- **사업목적** :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창업을 지원하여 실질적 투자 연계 및 매출 창출 기회 마련
- **지원대상** :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 창업기업
-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(최대 3천만원 이내, 차등지급),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등

#### 사업화 자금

시제품 제작, 지식재산권 출원 등에  
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

+

####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

BM 고도화, IR피칭텍 설계,  
멘토링, 네트워킹 등  
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

- **협약기간** :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( '24. 5월 ~ 10월 예정)
- **선정규모** : 10개사 이내

## 2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□ 신청자격

#### <신청 세부 조건>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
  -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
  - 창업여부 기준표[별첨 1]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
  - ※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
  - 본점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### □ 신청 제외 대상 :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#### <조건 예외 대상>

-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-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
-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-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#### <조건 예외 대상>

-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-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(기업)

\* 지원제외 대상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그 밖에 위와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\*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-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\* 단, 동일 아이템 및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내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,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

-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### 3 지원내용

□ **지원기간** :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( '24. 5월 ~ 10월 예정)

□ **지원내용**

○ 사업화 자금 지원 : 최대 3천만원 이내(\*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, 부가세 별도)

비 목	비목 정의
재료비	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창업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관련 비용 (※ 협약 기간 내 출원 완료 건만 인정)
지급수수료	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 등)
교육훈련비	참여연구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
○ 창업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

구분	주요내용	비고
창업교육	지식재산권 로드맵 구성, IR 피칭덱 설계, 투자 연계방안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운영	
멘 토 링	제품·서비스 기능,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진행	
네트워킹	창업기업의 정보 공유를 위한 울산항 견학, MINI Demo Day, 성과 보고회 진행	

※ 상기 프로그램은 유니콘테스트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시,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

※ 창업교육 4회 이상이며, 수요조사를 통해 주간 또는 야간에 진행 될 예정

○ 유니콘테스트 우수기업 선발

구분	상격	훈격	시상금	비고
1위	대 상	해양수산부 장관상	5백만원	
2위	우수상	해양수산부 장관상	3백만원	
3위	장려상	울산항만공사 사장상	2백만원	

※ 상기 내용은 평가결과 및 대·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창업공간 지원 : 울산 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



- 팀별 회의 및 휴게 가능한 공용공간, 지정 자리 없는 스마트 사무실(복합기 구비)
- 발표평가 준비를 프로젝터 시설 및 개별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 제공

## 4 신청 및 접수

□ **공고 기간** : '24. 3. 22.(금) ~ 4. 11(목)

□ **신청·접수 기간** : '24. 4. 1.(월) ~ 4. 11(목)

□ **신청방법** : 이메일 접수(mjkim822@unist.ac.kr)

※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(파일제목 : 2024년 유니콘테스트 신청서류\_신청기업명)

□ **제출서류**

구분	제출서류	수량	제출여부 (○/×)	비고
공동 서류	증빙서류 제출검토서	1부	○	양식 1
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1부		양식 2
	대표자 신분증 사본	1부		-
	사업자등록증명원 ※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	1부		-
	4대보험 가입자 명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	1부		-
	최근 3개년(21~23년) 재무제표 ※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	1부		-
	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	1부		양식 3
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		양식 4
	과제 참여 동의서	1부		양식 5
	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	1부		양식 6
기타서류	가점 관련 증빙서류	1부		-
	기타 참고자료 ※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그림 또는 문서 등	1부		-
<b>추가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</b>				

## 5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

□ **평가절차** : 총 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평가방법**

- ① 요건검토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서류검토 : 사업계획서를 평가(가·감점포함)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,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정

### <서류평가 가점 및 감점 대상>

구분	대상	점수	비고
가점	· 최근 3년 이내 현금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	2점	투자계약서, 입금증 등
	· 최근 3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자	1점	상장, 상패 등
	·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(출원, 등록 등) 보유자	1점	특허증, 실용신안등록증
감점	· 최근 3년 이내 유니콘테스트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	△2점	제출 불필요

※ 가·감점은 서류 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·감점 증빙서류만 인정

- ③ 발표평가 : 창업 아이템 계획 적정성, 실현가능성 및 성장전략,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동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(PPT)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 등에 대해 심층 평가
  - \* 평가시간 : 30분 이내(발표 15~20분 이내 + 질의응답)
- ④ 최종선정 : 발표평가 결과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-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
  - \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
  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## 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 계획 적정성, 실현가능성 및 성장전략,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\*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평가항목	세부내용
기업현황	· 최근 3년간 매출 발생 여부, 투자유치 현황(계획) 등
문제인식	· 창업 아이템 개발동기 및 해결방안 등 · 시장 규모 및 특성, 향후 전망 등 구체화 정도
실현가능성	·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 · 기술역량보유(지식재산권 등)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 방안 등
성장전략	·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 · 해당 창업아이템의 성장 가능성
기업구성	·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## 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모집 공고 2024. 3. 22. ~ 4. 11.	▶	창업기업 신청·접수 2024. 4. 1. ~ 4. 11.	▶	요건 검토 및 선정 평가 4월 3주차
				↓
오리엔테이션 및 협약 체결 5월 2주차	◀	협약 준비 5월 1주차	◀	선정 공지 4월 4주차
				↓
유니콘테스트 진행 5월 ~ 10월	▶	사업수행 5월 ~ 10월	▶	최종평가 10월 4주차

## 6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## 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함
-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,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, 이의 신청 가능
-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## □ 선정 관련 유의사항

-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지원사업비 환수,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, 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

## □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

- 선정자는 동 사업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금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,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신용(체크)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음
- 협약 기간 종료 후 2주 이내에 창업 지원금 사용실적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

## 7 문 의 처

### □ 사업 신청 문의

- 담 당 자 :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
스마트 향만물류 지원센터 유니콘테스트 담당자
- 문 의 처 : ☎ 052-217-2797  
✉ [mjkim822@unist.ac.kr](mailto:mjkim822@unist.ac.kr)

[별첨 1] 창업 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
과점주주 여부	다른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-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 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1.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 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"창업"으로 판단
- 2. 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